

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요건

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하려면 아래의
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해요!



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

- 전기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(2인이내)
- 전동킥보드(1인), 전동이륜평형차(1인)



25km/h 이상 시에는 전동기가
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.



차체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.

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
안전확인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여야 합니다.

-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제한 금지된 구간 이용불가
-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(인도 주행 금지)
-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
- 음주운전 금지, 과속 금지, 보행자 배려
- 만 16세 이상,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자만 이용

"배려가 만드는" 아름다운 자전거문화



"배려가 만드는"

아름다운 자전거문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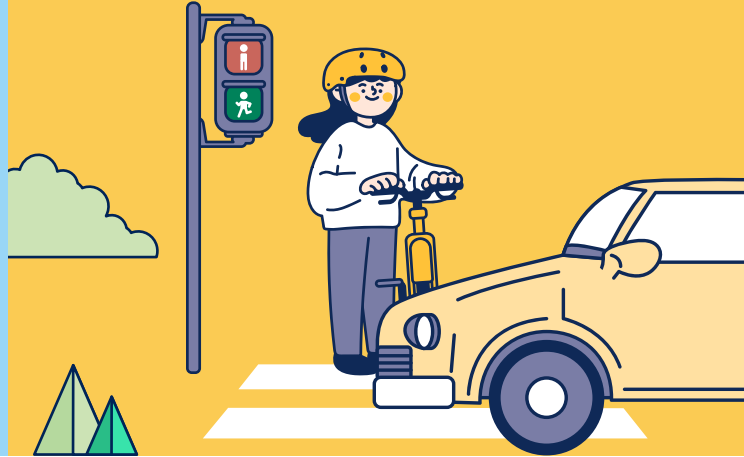
모두가 웃으며 이용하는 자전거 문화,
함께 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.



자전거 5대 안전수칙



차량·보행자 주의사항



전기자전거 운행 요건

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하려면 아래의
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해요!



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합니다.



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
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합니다.



음주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.



과속하지 않습니다.



휴대전화,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



안전거리

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
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.



주정차
금지

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·정차
하지 않습니다.



차량 우회전 시
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합니다.



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
이용하지 않습니다.



자전거·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
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넵니다.



페달보조,
스로틀

페달보조방식(PAS), 스로틀방식(Throttle),
겸용방식 모두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.



25km/h

25km/h 이상 시에는 전동기가
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.



30kg 미만

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자전거의
최대 무게는 30kg 미만 이어야 합니다.



안전확인
신고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
안전확인 신고된 전기자전거여야 합니다.

•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(인도 주행 금지)